

제 893 호  
1982. 2. 26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박영수  
편집 : 공보관 이영우  
전화 725-7834  
안 : 서울특별시통합일감실  
전화 725-6090

# 시보

## 차 례

◎ 규 칙	
제 257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보조금관리규칙 ..... 3
제 258 호 :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 6
◎ 고 시	
제 82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제개발사업시행인가및제개발조 합설립인가 ..... ●
제 83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9
제 84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터널 ) 실시계획인가 ..... 10
제 85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 11
제 86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 13
제 89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도로 ) 지적승인 ..... 14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류와의 효력을 갖는다

236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92 호 :	도로공사제 획공고 .....	14
제 93 호 :	도로공사제 획공고 .....	18
제 95 호 :	특정열 사용기자제시공업지정취소 .....	19
제 97 호 :	서울시립대학공인신조 ( 개각및 폐기 ) 등록공고 .....	20
제 98 호 :	서울시립대학공인신조 ( 개각및 폐기 ) 등록공고 .....	21
제 99 호 :	특정열 사용기자제시공업지정취소업소 .....	22
제 67 호 ( 중구 ) :	공인개각공고 .....	22
제 13 호 ( 강동 ) :	공인개각공고 .....	23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보조금 관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2.2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구분서 ㉔

**○교육규칙 제 257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보조금관리규칙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보조금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보조금관리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자치법 제 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이하 " 시교육위원회 " 라 한다 ) 가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①이규칙에서 " 보조금등 " 이라함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②이규칙에서 " 보조사업 " 이라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규칙에서 " 보조사업자 " 라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 보조대상 ) 보조금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 4 조 ( 보조신청 ) ①보조금등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시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자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p>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p> <p>4.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p> <p>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p> <p>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p> <p>7. 보조사업의 효과</p> <p>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p> <p>9. 기타 시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p>	<p>교부목적의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②시교육위원회는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 5 조 (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 시교육위원회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 7 조 (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 시교육위원회는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관한 위배여부</p> <p>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p> <p>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p> <p>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p>	<p>제 8 조 ( 교부방법 ) ①공사비는 실적으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p> <p>②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말로전에 보조금등을 교부할 수 있다.</p>
<p>제 6 조 ( 보조금등의 교부조건 ) ①시교육위원회는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물의 자체부담과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등의</p>	<p>제 9 조 ( 사전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 ①시교육위원회는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건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등의 교부 결정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p>

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교육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 7조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0조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 조례에 의거한 시교육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 12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시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시교육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시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교육위원회는 제 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관한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보조금등의 반환) 시교육위원회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되어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경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때
- 2.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때

제 17 조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 1. 법령, 규칙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때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때
- 4. 이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때

제 18 조 ( 감독 ) 시교육위원회는 보조금등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 준용 ) 기타 이규칙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 1982. 2.22 )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2.2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구본석 ㉠

◎교육규칙 제 258 호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 관한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중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한다.

제 5 조 제 1 항 중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 1982. 2.22 )

이규칙은 1982. 3. 1부터 적용한다

(별지 1)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구분 학교별	년, 기 (월)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 지 구	비 고
대 학	년	255,000 (201,000)	80,000		6개월을 1기로 징수함. ( )은 현 2, 3학년 학생임.
	기	127,500 (100,500)			
고등학교 (공·사립 인문, 실업)	년	259,080	6,420	1급지	3개월을 1기로 징수함.
	기	64,770			
각종학교(고)	년	233,160	5,770	"	"
	기	58,290			
고등기술학교(고)	년	233,160	5,770	"	"
	기	58,290			
방송통신고등학교	년	45,640	2,940	"	6개월을 1기로 징수함.
	기	22,820			
중학교 (공·사립)	년	150,600	5,400	"	3개월을 1기로 징수함
	기	37,650			
각종학교(중)	년	150,600	5,400	"	"
	기	37,650			
특수학교(중)	년	150,600	5,400	"	"
	기	37,650			
기술학교(중)	년	135,600	2,880	"	"
	기	33,900			
고등공민학교	년	87,960	2,880	"	
	월	7,330			
국민학교 (사립)	년	127,200	3,940	"	
	월	10,600			
유 치 원	년	171,840	6,970	"	
	월	14,32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2 호

마포로제 1.구역제 10 지구제개발사업 시행인가및제개발조합설립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45 호 ( 79.9.21 ) 로 제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146 호 ( 80.5.19 ) 및 서울시고시 제 11 호 ( 82.1.8 ) 로 사업계획결정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10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하여 제개발사업시행 및 제개발조합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2. 2.22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마포로 제 1 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가포구 도화동 16-17 외 31 필지

다. 시행면적 : 3,667.6 ㎡

라. 대지면적 : 9,277 ㎡

마. 공공용지 부담면적 : 390.6 ㎡

바. 건축개요 (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서 확정함 )

○ 건축면적 : 1,475 ㎡

○ 연 면 적 ㎡ 22,130 ㎡

○ 건 세 율 : 45 %

○ 용 적 율 : 445 %

○ 주 용 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및 판매시설

○ 층 수 : 지상 15 층, 지하 3 층

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마포구 도화동 16-42 번지

아. 시행기간 : 1982.2.22 - 1983. 12.31

자. 시행인가년월일 : 1982.2.22

차.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42 번지

마포로 제 1 구역 제 10 지구 제 개발조합 발기인 대표 홍상기

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래의 권리명세서 ( 별첨 )

○ 서울특별시고시제 83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41 호 ( 82.1.

28)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2. 26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용산구 동빙고동 304-2 - 동빙고동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 8군알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폭 : 21m - 24.6m - 44m  
연장 : 371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20일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8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터널)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5 호 (82.1.27)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터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종합건설본부 공사1부 및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2. 26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위치 : 강서구 화곡동산 162번지 일원 (화곡1동 - 화곡본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까치산 터널 (강서로) 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터널 : 폭 = 9.9m X 2 열  
연장 = 410m  
접속도로 : 폭 = 30m  
연장 = 42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83.12.30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

○서울특별시고시제 85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294E호(66.2.17)에 의한 시설결정 및 서울시고시 제 120호 (73.7.16)로 지적 고시된 영등포구시행 구로2교-신길광장간 도로신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하고있음.

1982. 2.26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사업시행의위치 : 영등포구신길 5동, 대림 1동  
  - 시점 : 영등포구신길 5동 424번지앞
  - 종점 : 영등포구대림 1동 824의 56번지앞
2. 사업의종류및명칭 : 구로2교-신길 광장간도로신설공사
3. 사업의규모 : 폭 25m, 연장 70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5. 착수및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2. 6.30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방촌토지, 건물조서참조  
 별첨 :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각 1부

인 가 증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증

1.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신길 5동, 대림 1동  
  - 시점 : 영등포구신길 5동 424번지앞
  - 종점 : 영등포구대림 1동 824의 56번지앞
2. 사업의종류및명칭 : 구로2교-신길 광장간도로 신설공사
3. 사업의규모 : 폭 25m, 연장 700m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1982.6.30.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85호

7.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외 조 (인가조건)  
 서 지번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서류 참조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  
 계획법 제 25조 및 동시행령 제 27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 인가신청을 별첨설계도서와 같  
 이 인가함.  
 1982. 2.26  
 서울특별시

가.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  
 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하여야한다.  
 나. 별첨 개략설계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1	대림동 824-61	대	47	47	도로	정남수	신림동 824-61
2	" 824-56	"	142	142	"	박상중	대림동 907
3	" 824-36	잡	50	50	"	이영흠	" 919-27
4	" 824-38	"	73	73	"	"	"
5	" 762-1	대	12,532	661	"	영향산(주)	" 762
6	" 762-1	"	12,532	21	"	"	"
7	" 762-9	"	128	128	"	"	"
8	" 844-36	"	625	115	"	이영중	세종로 1-15
9	" 845-1	"	5	5	"	담준방	대림동 845
10	" 761-3	전	118	118	"	영향산(주)	" 762
11	" 760-19	대	985	985	"	"	"
12	" 760-6	"	132	132	"	동보산(주)	인천시 북구 일신동 13-2
13	" 760-5	"	69	69	"	"	"
14	" 760-12	"	152	152	"	"	"
15	" 760-15	도로	20	20	"	영향산(주)	대림동 762
16	" 754-45	전	7	7	"	노병원	서대문구 신영동 214-45
17	" 760-17	"	33	33	"	유영산	대림동 730
계	" 17필			2,758			

물 건 조 서						
일반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1	대림동 760-2	세면부덕조	창고	6.38평	6.38평	동보전 인천시북구일신동 18-2
	-4	스택트룸				기 (ㄱ)
2	"	세면부덕조	사택	11.11평	11.11	"
	"	세면외급				"
3	"	세면부덕조	변소	1.0평	1.0	"
	"	스택트룸				"
4	824-61	목조세면 외 급	주택	12.4평	12.4	오원동 대림동 824-61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 서울특별시고시제 461 호 (79.11.5) 로 사실결정 및 지적승인되었으며, 동고시제 346 호 (80.10.14) 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이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경기도 광명시청 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2.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 당초 ) 경기도시흥군 철산리산 39-1 일대  
( 변경 ) 경기도광명시철산동산 39-1 일대 ( 신지번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변경

광명중, 고등학교

다. 사업면적및규모 : 변경없음

라. 시행자주소, 성명 : 변경없음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당초 ) 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7 일  
이내

준공예정일 : 1981.12.31

( 변경 ) 착수일 : 1982. 3. 1

준공예정일 : 1983.12.31

사. 위치 및 계획경면도 : 변경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p><b>○서울특별시고시제 89호</b></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09 호 (81.4.7)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p>		<p>및 건설부 고시제 521 호 (81.12.31) 권한 위임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2. 2. 24</p> <p>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조서</p>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	서대문구연희동 141-2일터	15,008㎡ (4,540평)				
<p>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p>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류	8m	230m	서대문구연희동산 5-41	서대문구연희동산 4-25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시행규칙 제 17 조의 2 에 의거 도로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 한다.</p> <p>1982. 2 .</p> <p>서울특별시장</p>			
<p><b>○서울특별시공고제 92 호</b></p> <p>도로공사계획공고</p> <p>1. 도로법 제 24 조의 3 및 도로법</p>		<p>1982. 2 .</p> <p>서울특별시장</p>					

가. 도로공사 계획 내역				
노선명	공 사 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	서오릉로 - 신사교간도로개설	녹번동 177 의 20 - 역촌동 43 의 52	은행구청	82.3.1 ~ 12.30
	• 용암국교앞보도육교가설	용암동 265 의 22	•	3.1-10.30
	• 신사교 - 증산교간 도로포장	신사동 23-1-증산동 152의 10	•	3.1- 8.30
	• 갈현동 465-498간딴띠우기	갈현동 465-498	•	3.1-6.30
	• 신사동 200 번지일대하수	신사동 200 번지	•	3.1-5.30
	• 신사동 230-240 의 1개소하수	신사동 230-240	•	3.1-7.30
	• 불광 2 동 319 주변포장	불광 2 동 319 번지	•	3.1-6.30
	• 불광 2 동 484 주변포장	불광 2 동 484 번지	•	3.1-6.30
	• 갈현동 417 의 1 - 419 의 28 주변포장	갈현동 417 의 1 - 419 의 28	•	3.1-6.30
	• 용암 1 동 110 의 1 - 118 주변 포장	용암 1 동 110 의 1 , 2 - 118	•	3.1-7.30
	• 용암 1 동 99 의 38-99 의 87 주변포장	용암 1 동 99 의 38-99 의 87	•	3.1-6.30
	• 신사동 237 의 124-237-405 주변포장	신사동 237 의 124-237 의 405	•	3.1-6.30
	• 신사동 237 주변포장	신사동 237	•	3.1-7.30
	• 증산동 290 의 2-83-10 주변 포장	증산동 290 의 2 - 83-10	•	3.1-7.30
	• 녹번동 155 의 9-155 의 29 주변포장	녹번동 155 의 9 - 155-29	•	3.1-5.30
	• 신사동 39 의 18-40 의 2 주변 포장	신사동 39 의 18-40 의 2	•	3.1-6.30
	• 갈현동 285 의 165-285 의 189 주변포장	갈현동 285-165	•	3.1-6.30
	• 갈현동 26 의 1-296 의 1	갈현동 26 의 1 - 296 의 1	•	3.1-6.30
	• 갈현동 426 의 1-426 의 18	갈현동 426 의 1 - 426 의 18	•	3.1-6.30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	진판내동 4-92	진판내동 4의 92	은평구청	5.1-5.30
별시도	주변하수			
·	진판내동 278 하수	진판내동 278	·	·
·	갈현동 414의 2 - 414의 25의 1건 하수포장	갈현동 414-20-414-25	·	·
·	불광2동 445의 5 - 445의 26 포장	불광2동 445의 5 - 445의 26	·	·
·	갈현동 435의 9 - 435의 5 포장	갈현동 435의 9 - 435의 5	·	·
·	용암2동 589의 34-586의 19 포장	용암2동 589의 34 - 586의 19	·	·
·	용암2동 586의 1-591의 5 포장	용암2동 586의 1 - 591의 5	·	·
·	역촌동 72의 1-72의 11 포장	역촌동 72의 1-72의 11	·	·
·	수색동 205의 1345-205의 1401 포장	수색동 205 - 1345-205의 1401	·	·
·	실사동 342의 1-342의 16 포장	실사동 342의 1 - 342의 16	·	·
·	불광1동 222의 3-222의 9 하수포장	불광1동 222의 3-222의 9	·	·
·	갈현동 414의 1-414의 5 하수, 포장	갈현동 414의 1 - 414의 5	·	·
·	갈현동 503의 11-450의 1 하수포장	갈현동 503의 11-450의 1	·	·
·	갈현동 448의 10-448의 17 하수포장	갈현동 448의 10-448의 17	·	·
·	역촌동 12의 31-12의 38 하수포장	역촌동 12의 31-12의 38	·	·
·	역촌동 4의 1-4의 11 하수포장	역촌동 4의 1 - 4의 11	·	·
·	역촌동 75의 9-75의 16	역촌동 75의 9-75의 16	·	·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증산동 191의 20-191의 33 하수포장	증산동 191의 20- 191의 33	은평구청	3.1-5.30
•	용암 1동 109의 14-109의 17 하수포장	용암 1동 109의 14- 109의 17	•	•
•	용암 1동 103의 1-103의 30 하수포장	용암 1동 103의 1- 103의 30	•	•
•	불광 2동 292의 11-292의 117 하수포장	불광 2동 292의 11- 292의 117	•	•
•	갈현동 276의 38-281의 190 하수포장	갈현동 276의 38- 281의 190	•	•
•	갈현동 228의 73-228의 28 하수포장	갈현동 228의 173- 228의 28	•	•
•	갈현동 228의 14-228의 48 하수포장	갈현동 228의 14- 228의 48	•	•
•	증산동 214의 6-214의 14 하수포장	증산동 214의 6- 214의 14	•	•
•	증산동 219의 28-219의 5 하수포장	증산동 219의 28- 219의 5	•	•
•	용암 1동 101의 26-101의 7 하수포장	용암 1동 101의 26- 101의 7	•	•
•	신사동 8의 24 하수포장	신사동 8-24	•	•
•	용암 1동 194의 19-101의 6 보도부력	용암 1동 194-19 101의 6	•	•

\* 도면생략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사업을 시행코저 하는 자는 본 공사 개시중여 시행토록 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3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시행령 제 24조 3항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 17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공사계획을 공고함.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열람케 한다.

1982. 2. 23.  
서울특별시 장

○ 도로공사 계획 내역

노선명	공 사 명	공 사 시 행 구 간	시 행 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구로 3 동 1129 의 39-1129 의 21 포장공사	구로 3 동 1129 의 39-1129 의 21 간	구로구청장	82.3.2-82.7.30
"	독산 3 동 878 의 1-산 36 의 17 포장공사	독산 3 동 878 의 1 - 산 36 의 17 간	"	"
"	시흥 1 동 68 의 5-298 의 3 가 포장공사	시흥 1 동 68 의 5-298 의 3 가 간	"	"
"	시흥 3 동 923-921 의 8 포장공사	시흥 3 동 923-921 의 8 간	"	"
"	독산 2 동 1045 의 31-861 의 28 하수포장공사	독산 2 동 1045 의 31-861 의 28 간	"	"
"	독산 4 동 200 의 10-1015 의 17 하수포장공사	독산 4 동 200 의 10~1015 의 17 간	"	"
"	독산 4 동 199 의 14-199 의 17 하수포장공사	독산 4 동 199 의 14-199 의 17	"	"
"	시흥 4 동 796 의 37-797 의 27 의 1 개소 하수포장공사	시흥 4 동 796 의 37-797 의 27 시흥 4 동 796 의 38-796 의 1	"	"
"	개봉 2 동 310 의 8-310 의 9 의 1 개소 하수포장공사	개봉 2 동 310 의 8 - 310 의 39 개봉 2 동 203 의 16-203 의 9	"	"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계봉3동 403의 86-354외12 하수포장공사	계봉3동 403의 86-354의 12칸	구로구청장	82.3.2 -82.7.30
	시흥1동 869의 70-869의 35 하수포장공사	시흥1동 869의 70-869의 35칸	.	.
	시흥1동 529의 28-526의 34 하수포장공사	시흥1동 529의 28-526의 34	.	.
	시흥1동 122-108 간 보도 부력포장공사	시흥1동 122-108 간	.	.
	시흥1동 133의 10-127의 23 보도부력포장공사	시흥1동 133의 10-127 의 23칸	.	.
	오류1동 38의 40 석축공사	오류1동 38의 40	.	.
	독산1동 144의 45-144의 222 포장공사	독산1동 144의 45 - 144 의 222	.	.

• 도면생략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 기간중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 제 95 호  
특정열사용기자제시공업 지정취소

상기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에너지 아용합리화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

1982. 2.  
서울특별시

○ 지정 취소 업체명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중구 26호	대한연수공업(주)	이종각	수구봉리동 1가 89	시공기술요원 2명 미배용
• 33호	(주) 삼원전공	윤장수	• • • 126-1	무단취업 및 시공실적 미보고
• 44호	제일기제설비(주)	강정균	• 황학동 2277	.

지정번호	업 차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중구64호	대 우 공 영 (주)	김 용 길	충구을지로3가282-5	법정공구 미바, 무단폐업 및 시공실적보고
78호	윌커스탈라에너지 엔지니어링	신 경 찬	• 목정동27-10	무단폐업및시공실적미보고
82호	선일설비공사	이 선 수	• 황학동 2277	.

○ 서울특별시 공고제 9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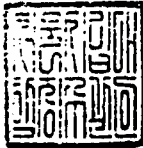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공인신조(개각및 폐기)등록광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개각, 폐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인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2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장

- 공인명  
가. 개각 - 서울시립대학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나. 폐기 - 서울산업대학장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 사용(폐기)개시일자: 1982.3.1
- 공인의 인영: 다음

인 영	개 각 	
공인명	서울시립대학장수관인	서울시립대학수입금출납원인
인 영	폐 기 	
공인명	서울산업대학장수관인	서울산업대학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공고제 98 호**

서울시립대학공인신조 (개각및 폐기) 등록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개각, 폐기) 하여 서울특별시외계 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인규정 제9조및 서울특별시관인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2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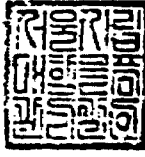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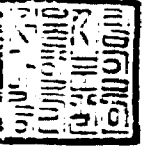



1. 공인명  
가. 개각 - 서울시립대학물품관리관인  

- 물품출납원인
- 분임물품출납원인
- 분임경리관인
- 분임지출원인
- 국민저축조합장인

나. 폐기 - 서울산업대학물품관리관인  

- 물품출납원인
- 분임경리관인
- 분임지출원인
- 국민저축조합장인

2. 사용개시일자 : 1982.3.1  
3. 공인의 인명 : 다 음

인 영	개 각 		
공인명	서울시립대학 물품관리관인	서울시립대학 물품출납원인	서울시립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인 영			
공인명	서울시립대학 분임지출원인	서울시립대학 국민저축조합장인	서울시립대학 분임물품출납원인

○ 서울특별시 공고제 99 호 지정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와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특정열사용기자제시공업지정취소업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1 항 및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982. 2. .  
서울특별시 장

○ 특정열사용기자제시공업 지정취소업소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관계법규
15	성원기업	화양동 152-17	장병국	무단폐업및시공실적미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0 조 1 항 및 5 항
23	삼정보일러	자양동 158-6	최삼열	"	"
39	영창상회	중곡동 245-5	황수창	"	"
45	현대공사	자양동 227-40	김윤철	"	"
67	메탈설비공사	능동 224-16	김영영	"	"
80	협성솔라에너지	구의동 246-16	조원용	"	"

○ 중구공고제 67 호

공인개각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대문로 5가동장의 직인및 제인을 개각하였기 동 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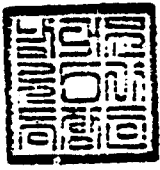

1. 개각사용년월일 : 1982.3.2

09:00 부터

2. 개각된직인 : 남대문로 5가동장 직

인 및 제인





3. 공인개각인명 : 아 래

인	
영	

공인명 남대문 5가동장인 및 제인

1982. 2. 26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p><b>○강동구공고제 13 호</b></p> <p>관 인 개 각 공 고</p> <p>강동구 천호제 2 동장 및 송남동장직인 을 아래와 같이 개각사용승인하고 서 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 고함.</p> <p>1982. 2. . 강 동 구 청 장</p>		<p>1. 관 인 명</p> <p>천호제 2 동장의 인 및 직인</p> <p>송남동장의 인 및 직인</p> <p>2. 사용계시일 : 1982. 3. 2</p> <p>3. 관인의 인명 : 아 래</p>	
인 영	 	 	
공 인 명	천호제 2 동장의 인 및 직인		송남동장의 인 및 직인
<p><b>사 령</b></p> <p>○ 1982 년 2 월 23 일자 명제 68 호</p> <p>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 방 화 공 기 과 학 정 율</p> <p>수원기전과 수질계장</p>		<p>명제 67 호</p> <p>성 동 구 총 무 과 이 명 신 지 방 행 징 주 사 보</p> <p>운수 2 과 ( 교통 종합민원신고센터 ) 파견근무 ( 82.2.23-82.8.22 )</p>	

<p>민 방 위 과 김 용 부 지 방 행 정 주 사</p> <p>운수 2과 (고용종합원원신고연타) 파견 근무를 해제함.</p> <p>명제 70호</p> <p>마포구 산업과 이 연 부 지 방 행 정 서 기</p> <p>행정서기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 1982년 2월 27일자 명제 73호</p> <p>동작구 청소과 신 해 운 지 방 행 정 서 기</p> <p>종합운동장 관내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 82.2.27~82.12.31)</p> <p>○ 1982년 2월 26일자 명제 74호</p> <p>운 수 1 과 이 계 오 지 방 행 정 주 사</p> <p>부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3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운 수 1 과 박 종 인 지 방 행 정 주 사</p> <p>부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3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p> <p>운 수 1 과 최 영 환 지 방 행 정 주 사</p> <p>부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1, 2, 3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명제 75호</p> <p>도 로 과 과 상 홍 지 방 토 목 기사 보</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서 울 목 번 시 장</p>
---	--